의안번호	제 210 호
의 결	2011년 9월 일
연 월 일	(제 303 회)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전응천 교육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10 (전응천 교육의원 대표발의)

○ 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
○ 발 의 자 : 전응천, 최미애, 장병학, 박상필

이광희, 최진섭, 하재성의원(7인)

1. 개정이유

-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"기관카드 사용 의무화,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, 이의신청"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
-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, 교부 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(안 제8조의2)
- 나.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(안 제18 조의2)
- 다.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

라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11. 8.11. ~ 9. 1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9조제5항에 따라"로, "등에 과하여"를 "등에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보조금이라 함은 교육감이"를 "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 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조사업 이라 함은"을 "보조사업 이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의 "보조사업자라 함은"을 "보조사업자라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와 제2항제9호의 "기타 교육감"을 "그 밖에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제4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4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, 조례,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.
- 제7조 중 "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"으로 하고, "부가하여"를 "붙여"로 한다.
-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의2(보조금의 사용)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9조제1항 중 "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"를 "교부결정을 한후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"로. 제2항의 제1호 "기타 시설"을 "그 밖의 시

- 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의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- 제10조 중 "조례에 의거한"을 "조례에 따른"으로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다"로 한다.
- 제11조, 제12조 중 "얻어야"를 "받아야"로 한다.
- 제14조 중 "얻은"은 "받은"으로, "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"를 "실적 보고서와 지출증빙서, 그 밖에"로 한다.
- 제16조 중 "각 호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하고, "지체없이"을 "지체 없이" 로 한다.
- 제17조 중 "다음 각 호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한며, 같은 조 3호의 "허위 또는 부정한"을 "거짓 또는 부정한"으로 한다.
-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의2(이의신청)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1.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
 - 2. 교부 결정의 취소
 - 3. 보조금의 반환명령

- 4.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며, "동법시행령"을 "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"	"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"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 령」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,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제29조제5항에 따라</u> <u>등에</u>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조례에서 "보조 금"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 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 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②이 조례에서 "보조사업"이라 함은 보 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 업을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조례"보조 금"이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 이라 한다)이
③이 조례에서 "보조사업자"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	③ 이 조례 "보조사업자"란
제4조(보조금의 교부신청서)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조(보조금의 교부신청서) ① 보조금-
1.~ 5. (생 략) 6. <u>기타 교육감</u> 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	1.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에 교육감</u> <u>② 제1항</u> 의
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8. (생 략)	 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기타 교육감</u> 이 정하는 사항 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교육감은 <u>제4조</u>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	9. <u>그 밖에 교육감</u> <u>제4조</u> 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<u>제4조</u> 에 따른

혀 행

개 정 안

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, 조례,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- 제7조(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)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교부방법) <u>①공사비는</u> 실적비로 교 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 로 교부한다.
 - ②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8조의2(보조금의 사용) <신 설>

1 / 취취되 기. () \
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교육감은
<u>보조금 교부 결정 시</u>
<u>상응하는 비율</u>
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
②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
보조사업의 완료로
 많은
<u>ㅎㄷ</u> 범위
<u>명기</u> 에서
<u> </u>
제7조(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)
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
<u>붙여</u>
제8조(지급방법) ① 공사비는
•
② 공공단체에

제8조의2(보조금의 사용) (1)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의 기관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 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현 행	개 정 안
	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
	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
	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9조(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) ①	제9조(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) ①
<u>교육감</u> 은 보조금의 <u>교부를 결정한 경우</u>	교육감 교부결정을 한
<u>에 있어서 그 후에</u> 발생한 사정의 변경	후에
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	
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	
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	
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	
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	
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	
할 수 없다.	
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	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
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	
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	
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	
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	
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	
에 한한다.	
1.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	1
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	<u>그 밖의 시설을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	③ 제7조의 제1항에 따라
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	
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	
	 게10조/요ㄷ 이 사요그기)
제10조(용도외 사용금지) 보조사업자는 법령,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	제10조(용도 외 사용금지)
조건 또는 법령, 조례에 의거한 교육감	조례에 따른
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	<u>그네케 씨는</u>
그 시교에 찍어 건강한 현무사고 경험	

현 행	개 정 안
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	
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<u>아니</u>	아니
<u></u> 된다.	된다.
제11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) 보조사업자	제11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)
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	
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	
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	
감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	
제12조(보조사업의 인계 등) 보조사업자는	제12조(보조사업의 인계 등)
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	
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	
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	
승인을 얻어야 한다.	<u>받아야</u>
제14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보조사업	제14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 보조사업
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	مر المارية الم
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	 받은
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	
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	실적 보고서와 지출증빙서, 그 밖
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	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
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	
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	
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	
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	
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
제16조(보조사업의 보고) 보조금의 교부를	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
받은 자가 다음 <u>각 호에</u> 해당하는 사유	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교육감	<u>지체 없이</u>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	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
재)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<u>다음 각 호</u>	재) <u>다음 각</u>

혉 했 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4. (생략) 제18조(감독)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,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제18조의2(이의신청) <신 설>

제19조(준용) <u>기타</u>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<u>동법시행령</u>을 준용한다.

개 정 안
호의 어느 하나에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
교부를 받았을 때
4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감독)
제18조의2(이의신청) ① 보조사업자는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
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
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
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1.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
2. 교부 결정의 취소
3. 보조금의 반환명령
4.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교
<u>육감의 처분</u>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
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
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반
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
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9조(준용) <u>그 밖에</u>
<u>같은 법 시행령</u>

	_
--	---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[시행 2011. 9. 9][법률 제10439호, 2011. 3. 8, 일부개정]

제17조(기부·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·보조·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</u>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3.8>

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1.3.8>
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3.8>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2532호, 2010.12.20, 일부개정]

제29조(공공기관의 범위 등)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
하여진 기관으로 한다.

-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"그 밖의 공금의 지출"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.
-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-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당해 지방</u> <u>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정한다.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법률·대통령령· 총리령·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와 조례·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0조 (부패유발요인의 검토)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와 조례·규칙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·검토(이하 "부패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

- 1. 부패유발의 가능성
- 가.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
- 나.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
- 다.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
- 2.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
- 가. 국민·기업·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- 나.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
- 다.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·타당성 여부
- 3. 행정절차의 투명성
- 가. <u>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</u>되는지 여부
- 나. 준비사항·처리절차·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
- 4.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
-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, 평가기준,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<u>법 제28조제1항</u>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

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·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·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판단체의 장은 사규정판 등 내부규정(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판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판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